2023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생 선발 안내(재학생)

□ 성적우수장학금(학과 자체 기준에 의하여 선발)

○ 대상자

- 우수 A: 직전학기(2022학년도 2학기) 평점평균 3.750이상인 학생 중 선발
- 우수 B: 직전학기(2022학년도 2학기) 평점평균 3.500이상인 학생 중 선발
- 우수 C: 직전학기(2022학년도 2학기) 평점평균 3.000이상인 학생 중 선발

※ 2019학년도 이후 신입생(2021학년도 이후 편입생)부터는 비교과교육과정 유닛 기준 적용

※ 상기된 점수는 성적우수장학금 최소 이수조건으로 성적우수장학금 선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 학과에 문의(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. 다만 학과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있을 수 있음)

○ 성적우수장학금 공통 요건

-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
- 단, 2022학년도 2학기 기준 4학년 1학기일 경우 11학점(졸업필요학점 130학점) 이상 취득

○ 지급액

- 우수 A: 수업료 전액 감면
- 우수 B: 수업료 50% 감면
- 우수 C: 수업료 30% 감면

○ 선발방법: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각 학과 자체 기준에 의하여 선발

[참고] 비교과교육과정 유닛 기준표

장학금 지급 학년-학기	유닛기준 학년-학기	구분					
		신입생			편입생		
		차수	학기별 유닛	누적 유닛	차수	학기별 유닛	누적
1-2	1-1	1	4	4			
2-1	1-2	2	8	12			
2-2	2-1	3	8	20			
3-1	2-2	4	8	28			
3-2	3-1	5	8	36	1	4	4
4-1	3-2	6	8	44	2	8	12
4-2	4-1	7	8	52	3	8	20

- 유닛 산정기간: 1학기는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, 2학기는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
- 유닛기준 적용: 「학기별 유닛」 또는 「누적 유닛」 기준 충족
- 적용대상: 2019학년도 이후 신입생(2021학년도 이후 편입생)
- 복학생: 직전학기가 복학한 학기일 경우 학기별 유닛은 4유닛으로 한다.

□ 국가유공자 및 자녀장학금

○ 대상자: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기타법령에 의한 면제대상학생

- 국가유공자 본인(배우자): 성적에 제한 없이 재학 기간 내 계속 선발
- 국가유공자 자녀: 직전학기 취득한 성적이 평균 70% 이상 취득한 학생

○ 지급액: 전액

○ 구비서류

-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(최초 신청자, 복학예정자만 제출)
-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(보훈청 발급) 1부
  (최초 신청자만 제출)

□ 디딤돌 장학금

○ 대상자: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학생

- 디딤돌 A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1~3급)
- 디딤돌 B: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(4~6급)

○ 지급액:

- 디딤돌 A: 수업료 전액 감면
- 디딤돌 B: 수업료 50% 감면

○ 구비서류

-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
-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1부

□ 혜윰Ⅲ장학금

○ 대상자:「아동복지법」제52조제1항제1호아동양육시설, 제4호공동생활 가정 생활자 또는 퇴소자

○ 지급액: 수업료 전액 감면

○ 구비서류

-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
- 보호종료(연장)아동 증명서 1부

□ 혜윰Ⅳ장학금

○ 대상자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실직 또는 폐업 등 (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자에 한함)으로 갑작스러운 가계 곤란을 겪는 학생 중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

※ 학자금지원구간 및 성적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하여 지원

○ 지급액: 수업료 전액 감면

○ 구비서류

-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
- 증빙서류

구분		증빙서류	발급방법
실직	비자발적 실직 (택1 제출)	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	온라인발급(고용보험 홈페이지)
		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	온라인발급(고용보험 홈페이지)
	기타 실직 (택1 제출)	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신고사실통지서	근로복지공단(1588-0075)
	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온라인발급(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)
폐업 (동시 제출)		폐업사실증명원	온라인발급(국세청 홈택스)
		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	온라인발급(국세청 홈택스)

□ 새터민장학금

○ 대상자: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학생

○ 지급액: 수업료 전액 감면

○ 구비서류

-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
-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

□ 다문화가정장학금

○ 대상자: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, 평점평균이 3.000이상이민자 본인 또는 다문화가정자녀 학생

○ 지급액: 수업료 전액 감면

○ 구비서류

-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
- 이민자 본인: 혼인관계증명서 1부
- 다문화가정자녀
  · 부모가 귀화한 경우: 귀화한 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1부,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· 부모가 귀화하지 않은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 1부

※ 귀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 제출 시,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

□ 성취장학금

○ 대상자: 평점평균이 3.000이상인 재학생으로 아래와 같이 어학 및 취업 관련 자격 기준을 갖춘 학생

○ 지급액:

- 성취장학금 A: 수업료 전액 감면
- 성취장학금 B: 수업료 50% 감면

○ 구비서류

- 교내장학금 신청서 1부
- 어학, 취업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취득확인서 각 1부
- 성적증명서 1부

○ 자격기준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구분</th><th>자격 및 선발기준</th><th colspan="2">구분</th><th>자격 및 선발기준</th></tr>
<tr><td rowspan="2">A</td><td>어학</td><td>① 영어
· 토익 700점 이상
· 토플 PBT 540점 이상
· CBT 207점 이상
· IBT 76점 이상
· 텝스 625점 이상
· IELTS 6.5 이상
② 중국어
· HSK 5급 이상
· HSKK 고급
· CPT 650점 이상
③ 일본어
· JPT 650점 이상
· 일본어능력시험(JLPT)/N1</td><td rowspan="2">B</td><td>어학</td><td>① 영어
· 토익 600점 이상
· 토플 PBT 503점 이상
· CBT 177점 이상
· IBT 63점 이상
· 텝스 525점 이상
· IELTS 5.5 이상
② 중국어
· HSK 4급(210점) 이상
· HSKK 중급
· CPT 550점 이상
③ 일본어
· JPT 550점 이상
· 일본어능력시험(JLPT)/N2</td></tr>
<tr><td>취업관련</td><td>① 국가전문자격*
*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국가전문자격증
② 국가기술자격 1급 또는 기사 이상</td><td>취업관련</td><td>① 국가기술자격** 단일등급, 2~3급, 산업기사, 기능사 또는 그 이상
**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(제3조 관련)에서 정한 국가기술자격증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비고</td><td colspan="3">▪ 어학 및 취업관련 자격기준 모두 만족하여야 함
▪ 성취 A, 성취 B는 재학기간 내 각각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
▪ 어학성적, 자격증 모두 1회에 한하여 인정
▪ 외국어전공 학부생의 경우 본 기준 점수보다 어학 관련 자격 점수를 향상 취득하여 함
① 토익・JPT・CPT·텝스: 본 기준 점수보다 50점 이상
② 토플 PBT: 20점 이상
③ CBT: 15점 이상
④ IBT: 7점 이상
⑤ IELTS, HSK, 일본어능력: 1등급 이상 상위등급
▪ 외국어 성적 인정 여부 : 휴학기간 중 취득한 성적은 인정 불허
▪ 성적 및 자격증은 본교 입학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
▪ 외국어 성적 유효기간 : '23. 1. 20. 기준 2년 이내
▪ 2022학년도 2학기 성취장학금 수혜자에 한하여 계속 장학금 수혜를 받으려면,
① 토익・JPT・CPT·텝스는 전회차보다 50점 이상, 토플(PBT 20점 이상, CBT 15점 이상, IBT 7점 이상) 상향 취득을 해야 됨
② IELTS, 일본어능력, HSK자격증 등급은 전 회차 보다 상위 등급이어야 됨
※ 2022학년도 제3차 장학위원회 결과 적용</td></tr>
<tr><td colspan="6">취업관련 자격증 종류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트,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<별표2> 참고</td></tr>
</table>

□ 유의사항

○ 졸업·졸업 유예·수료 예정자, 정규학기 초과자는 장학금 해당 사항 없음

○ 장학생으로 선발 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해야만 장학혜택이 유효함(미 등록시 장학금 소멸)

○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금액이 "0"원인 경우에도 반드시 은행 수납필 영수증을 받아야 함

○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교내장학생 선발 제한조항 삭제(단,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구간이 포함된 교내장학금은 제외)

○ 학비감면 장학금은 등록금 납부 시 감면 처리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

○ 구비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

○ **교내장학금은 학생 신청에 의한 장학금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으면 학교에서는 지급 의무 없음**

한밭대학교 학생처 장학복지팀